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7821 판결 [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23.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. 3. 4.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매월 6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상훈

별지